

신 바와같이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원안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이 있음)

감사합니다.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.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,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. 그동안 3일동안 짧은 의사일정속에서도 원만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것으로서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

(12時 15分 散會)

○出席議員(26人)

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
| 金 元 泰 | 黃 泰 植 | 曹 熙 太 |
| 宋 潤 錫 | 金 星 换 | 朴 琯 緒 |
| 李 鐘 萬 | 李 奉 衡 | 具 又 石 |
| 韓 賢 惠 | 金 鐘 烈 | 沈 載 祖 |
| 洪 性 换 | 俞 南 烈 | 金 汶 泰 |
| 李 宗 一 | 鄭 然 宇 | 金 相 烈 |
| 李 康 泌 | 蔡 雲 錫 | 洪 吉 枝 |
| 田 炳 萬 | 李 仁 求 | 尹 正 繡 |
| 尹 明 奎 | 權 五 範 | |

○出席公務員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|
| 副 區 警 長 | 潘 尚 均 |
| 總 務 局 長 | 河 永 基 |
| 財 務 局 長 | 池 榮 昌 |
| 市 民 局 長 | 姜 信 在 |
| 都 市 整 備 局 長 | 李 相 河 |
| 都 市 整 備 課 長 | 金 仁 换 |
| 總 務 課 長 | 李 春 基 |
| 保健行政課長 | 俞 泰 凤 |

(参照)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

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4. 1. 20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. 11. 19.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3. 11. 22.

다. 상정일자

제20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(93. 12. 22)

상정, 질의토론.

제2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94. 1. 20)

질의토론,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영찬)

가. 제출이유

- 구유재산의 대부료(사용료)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('94.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시달)함에 따른 조례상의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,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준용토록 함(안 제22조 제5항).
-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 삭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- 동 개정조례(안)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1항 및 산림법 시행령 제62조1항에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, 구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일치시켜 그 체계를 일원화하고,
-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 관리등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하는 등 구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취지로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질문(김유현위원) : 마포구 관내에는 구유임야가 얼마나 있나?

○ 답변(유윤암 공원녹지과장) : 현재 12필지 5,466m²가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4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구유재산의 대부료(사용료)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,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('94.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시달)함에 따른 조례상의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,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개정골자

- 구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준용토록 함(안 제22조 제5항).
- 구야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 삭제

3. 개정근거

- 지방재정법 시행령(1992. 3. 30. 대통령령 제13624호) 제92조 제1항
 - 산림법시행령(1992. 12. 31. 대통령령 제13811호) 제62조 제1항
 -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준칙(안) : 재산13330-3255(93.11.13)
4. 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5. 예산수반여부 : 해당없음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 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·세출에 이입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구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33조,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(다음 「페이지」에 계속)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2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<u>①-④(생략)</u> <u>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(조림용을 제외한다)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</u> <u>제33조(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)</u> <u>① 구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유 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</u> <u>②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, 국·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·취득·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.</u> <u>제34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</u> <u>① 구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u> <u>1. 구유재산(구유림을 제외한다)의 매각대·대부료·사용료: 그 수입금액의 10퍼센트</u> <u>2. 구유임야 매각대·대부료: 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</u> <u>3. 구유재산 매각대·대부료·사용료·변상금 등: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수입금액의 10퍼센트</u> <u>4. 일반회계 전입금: 부족재원</u> <u>② 구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구유림 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구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u> <u>제35조(준용규정)</u> <u>구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.</u> | 제2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<u>①-④ (현행과 같음)</u> <u>⑤ 구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u> <u>(삭 제)</u> <u>(삭 제)</u> <u>(삭 제)</u> |